

#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8호
------	---------

발의연월일 : 2025. 1. 20.

발 의 자 : 지민규, 이연희, 홍기후,  
김응규, 편삼범, 윤기형,  
이정우, 정광섭, 고광철,  
이종화, 김민수, 안종혁,  
박미옥, 박정식, 윤희신,  
김석곤, 구형서, 박정수,  
신순옥, 박기영, 김도훈,  
정병인, 신영호, 이철수,  
방한일, 유성재, 이재운,  
전익현, 김복만, 오인철,  
김옥수, 이상근, 안장현  
의원(33인)

## 1. 제정 이유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중장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등(안 제4조)

-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

도록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지원사업(안 제6조)

-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규정함

라. 경력인정 등(안 제7조)

-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안 제8조)

-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노후준비 지원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의견(2025.1.8., 여성가족정책과)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4.12.23.,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4.12.1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와 직업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지역 산업·경제와 중장년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
3. 중장년의 직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4.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현황
5.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실태
6.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

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관련 홍보, 마케팅, 협업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6. 중장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7.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력인정 등)** 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정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하였던 지원사업, 경력인정 및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규

□ 기본정책기본법[법률 제19965호, 2024. 1. 9., 시행]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

## 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시행]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20112호, 2024. 4. 24.,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노후준비 지원법[법률 제20588호, 2024. 12. 20., 시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 는 지원계획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 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 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 는 지원계획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 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u>대해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u> 2년마 다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 호] 제17조(성인지 통계) ①항 에 따라 실태조사에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 도록 조사해야 함. 이미 조례 안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항 6에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현재 제5조) :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기본계획)
  -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포함하여 수립시 - 비용 미발생
- 제5조(실태조사)
  - 충남 취업 및 일자리 통계데이터 활용시 - 비용 미발생
- 제6조(지원사업)
  - 제1호~제10호 기존사업 추진 및 일자리 사업 각 부서 추진시  
중장년 대상 병행 추진 전제 - 추가비용 미발생
- 제9조(재정지원)
  - 지방보조금 유사사업 적용 - 비용추계

###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부기명)	2025년도 도 예산액	비고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지원 -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 - 구직자 면접수당 지원사업 -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72,000 86,200 167,10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총 예산액 170,000천원	20,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총 예산액 4,112,902천원	2,673,387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예산서 참고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대상

- 제9조(재정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 대상별 전제

- 재정지원(안 제9조)의 경우 유사 지방보조금 사업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경제정책과 \_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및 지원사업 43,000천원)

### 다. 추계 상세내역

-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안 제9조)≒ 245,000천원
  - 연간비용 ≒ 43,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중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지원	43,000	43,000 × 1식	

####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유사 지방보조금 사업 적용: 경제정책과 \_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및 지원사업 43,000천원

- 연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9)	계
		중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안 제9조)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세출								

라.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2억 15,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215,000천원(연평균 43,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소계(a)	-	-	-	-	-
세출	중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안 제9조)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소계(b)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 총 비용(b-a)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budget20@korea.kr)

